

## 판결담의 서사구조와 판결하는 주체의 리더십 연구

황인순\*

<차례>

1. 서론
2. 판결담의 범주와 서사구조
3. 판결담의 유형분류와 구조분석
4. 공동체의 지향과 판결하는 주체의 리더십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기문총화>와 <청구야담>에서 기술된 ‘판결담’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판결하는 주체의 자질을 통해 고전 텍스트 속 ‘리더십’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판결담은 갈등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공동체 내의 주체들이 문제 제로 인식하는 현상을 ‘판단’한다. 두 번째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공적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공표’한다.

판단과 공표라는 이중적 특질을 고려한다면 판결담의 구조와 유형은 단순히 현상을 인식하고 해독하는 판단의 과정 뿐 아니라 공표의 과정에서도 포착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판결담을 추출하고 유형화한다. 판결담은 갈등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판단하며 동시에 이를 판결의 과정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판결이 단순히 비범한 개인의 능력과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놓인 사회적 코드 내에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공동의 과정임에 주목한다.

따라서 리더십이란 결국 비범한 개인의 역량으로서만 규정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지향 안에 존재하는 집합적 대상으로서도 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체계가 생성하고 제공하는 선택 가능항들이 ‘좋은’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판결담, 공적 주체, 판단과 공표, 고전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

## 1. 서론

본고에서는 야담집에서 기술된 ‘판결담’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이 속에서 판결하는 주체가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고전 텍스트 속의 ‘리더십’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판결담에 주목하는 것은, 판결이 사회가 갈등으로 인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화하는 과정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판결담은 우선 갈등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공동체 내의 주체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판단’한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공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해당 공동체에 ‘공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판결담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이 공동체의 가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판결담’을 특정한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이를 공적 주체가 공적 과정을 통해 수행하고 처리하는 이야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결담은 ‘판단’의 주체가 단순히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지혜담이나 이인담 등과는 구분된다. ‘공적’ 주체가 ‘공적’ 과정을 통해 판단하므로 ‘공적 발화’의 과정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 판단의 결과를 관련된 사안의 주체들에게 선포하고, 관헌이나 판결의 장이 위치한, 혹은 그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공동체에 까지 이러한 판결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공표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실제로 용어는 다르지만 판결담 류의 설화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송사설화 속에 나타나는 민중의식과 더불어

송사라는 장치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인경의 연구<sup>1)</sup>를 찾아볼 수 있으며 송사설화의 유형에 주목한 연구들 역시 적지 않다. 박여범<sup>2)</sup>은 구비문학대계에서 채록된 설화를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송사설화를 분석하였으며 이현웅<sup>3)</sup> 역시 문헌 소재 송사설화를 중심으로 이를 유형화하고 서사 구성 방식에 주목하여 분석했다. 용어를 조금 달리하였지만 정인관의 논문<sup>4)</sup> 역시 구비문학대계와 전래동화집을 중심으로 ‘원님’의 판결의 모티브가 된 설화들의 구조를 밝히고 그 교육적 의미를 타진하고 있다. 최경숙의 논문<sup>5)</sup>은 유형 분류에 주목한 앞서의 논문들과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판결담의 갈등해결 상황에 주목하여 특정한 말하기의 전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양상을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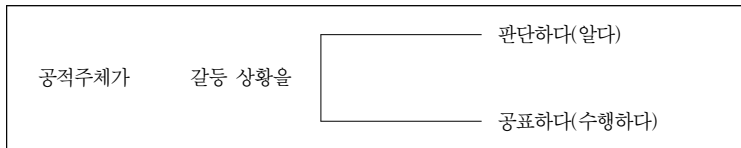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들은 송사설화 혹은 판결담을 중심으로 유형 및 구조 분석,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미 분석 등 다층적인 논의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판결담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갈등 양상과 갈등의 해결, 혹은 이를 해결하는 주체의 자질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판결담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갈등에 관해 특정한 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해결하는 유형의 이야기이므로 이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표와 발화라는 판결담의 특성을

- 
- 1) 이인경, 『口碑 ‘訟事說話’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화회 2007, 335~390쪽.
  - 2) 박여범, 『說話에 나타난 訟事의 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화회, 1996, 359~374쪽.
  - 3) 이현웅, 『문헌소재 송사설화의 유형과 의미』,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337~369쪽.
  - 4) 정인관, 『〈홀륭한 원님〉 설화의 구조와 의미』, 『청람어문교육』 1, 청람어문교육학회, 1988, 131~158쪽.
  - 5) 최경숙, 『『명판결담』에 나타난 갈등 해결적 말하기 전략: 사실 확인된 사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437~459쪽.

함께 고려한다면 판결하는 주체의 능력은 현상을 인식하고 해독하는 개별적 자질인 동시에, 사회적 법률과 관습이라는 공동의 선택 가능항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공동의 상호작용내부에서도 포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란 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지가 주어지는 사회 내에서 가능한 셈이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기문총화><sup>6)</sup>, <청구야담><sup>7)</sup> 소재 판결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2. 판결담의 범주와 서사구조

본고의 연구대상이 될 판결담들은 ‘공적’ 주체가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갈등 상황을 판단하는 이야기로 정의한다고 했다. 이를 통사구조로 변환한다면 주어의 자리에 ‘공적 주체’가, 목적어의 자리에 ‘판결이 필요한 문제적 상황’이, 서술어의 자리에 ‘판결하다’가 위치하는 구조이다. 즉, 주체가 공적 영역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판단의 과정은 공적 공간 안에 놓이는가,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표되는가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했을 때, 판결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6)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상·중·하, 아세아문화사, 2008.

7) 이월영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우선 첫 번째 조건은 판결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판결담에서 판결의 주체가 가진 능력, 즉 지혜, 강직 등은 물론 ‘올바른’<sup>8)</sup> 판결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주체가 단순히 판단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 즉 개인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판결’은 공적인 판결의 과정, 즉 재판의 과정을 거치거나 관의 공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체는 필연적으로 공적 주체여야 한다. 야담 속에서는 주로 고을을 다스리는 직책명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체들이라면 판결담의 주체로서 가능하다.

공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재판의 형태를 갖춘다거나 공적 의사결정 내로 주체의 판단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관헌에서 문제의 잘잘못을 밝혀내는 재판의 과정이 기술된 이야기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재판의 과정 자체가 생략되거나 소략하게 기술되어도, 재판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판결담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종이를 잃어버린 중의 하소연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돌려보낸 뒤 차후에 찾아준 <기문충화>의 이야기<sup>9)</sup>에서, 죄를 가리는 재판의 과정 자체보다는 문제해결의 과정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 역시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특정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갈등을 호소한 주체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문제해결 방식이 공표되는 것이므로 판결담의 일종이다. 갈등을 겪는 주체가 이를

8) 여기에서 ‘올바른’ 혹은 ‘나쁜’ 판결이라는 표현은 서사의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된다는 의미이다. 이야기의 말미에서 수행된 판결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거나 이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된다. 이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현재의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9) 김동욱 역(2008), 앞의 책(하), 203쪽.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단의 주체에게 발화하는 것이 이것이 공적 과정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판결이란 ‘판단’과 ‘공표’의 이중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판단과 기지가 아니라 ‘공적 주체들이 공적 과정을 거쳐 도출한 판단’이라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판결이 알려지거나, 기록되거나, 혹은 기억되거나와 같은 상황들이 이에 포함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이 판결이 ‘수행되는’ 것 역시 공표를 포함한다고 이해했다. 공적 판결이란 갈등 상황에 대한 특정한 판단이 공개된다는 의미이며, 그 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공동체 내부의 법률 및 관습, 즉 사회적 코드와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적합한 판결, 혹은 옳은 판결이라는 평가는 사회적 코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사 내부에서 판정된다. 즉, 판결이라는 공적 과정은, 판단의 결과가 갈등 상황에 관련된 복수(複數)의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판결담으로 분류했다.

야담집	권	번호	쪽	내용	유형
기문총화	상	119	293	수어사 이완이 시녀의 피붙이를 위한 대비의 청탁을 거절하다	2
기문총화	상	140	335	영남을 순시하다가 향청에서 사돈에게도 엄히 법을 내리다	2
기문총화	상	183	445	참판 유심이 술을 먹고 실수한 백성을 풀어주다	5
기문총화	상	204	527	신하의 충간을 듣고 연회를 베풀고 호피를 내준 숙종	5
기문총화	상	208	557	명을 어겼다가 조태채에게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건진 아전	3
기문총화	상	203	524	숙종에게 직간을 하다가 곤장 다섯대를 맞고 풀려난 판서 윤씨	2
기문총화	상	118	290	김해 부사 박영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4
기문총화	중	312	516	은혜입은 중에게 은혜를 갚으려다가 범인임을 알고 고발한 관찰사 황인검	2

기문총화	중	252	135	귀신의 한을 듣고 형조참의가 된 후 범인을 잡아준 김공	4
기문총화	중	313	521	귀신의 청을 듣고 살인사건을 해결한 조현명	4
기문총화	중	314	528	창녕 현감 고유가 악행을 일삼던 중을 처벌함. 죽은 후 청지기가 가난한 자손을 거둬준다	1
기문총화	중	271	243	어사 박문수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준 가난한 양반 소년에게 중매를 서고 결혼시켜준다	2
기문총화	중	270	232	어사 박문수가 자신을 문전박대한 기생을 벌하고 신의있던 그 여종을 치하하다	5
기문총화	중	307	480	이완이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준 도적의 괴수를 차후 처벌하지 않고 방면하다	5
기문총화	하	424	169	강서가 선조에게 술을 얻어 놀다가 자신이 탄핵당할 줄 알았으나 선조가 벌하지 않다	5
기문총화	하	437	228	자신의 청지기가 궁녀와 간통하여 이를 호소해 목숨을 구하다	3
기문총화	하	416	149	형조판서 이완이 임의로 재판중에 사람을 죽인 이를 벌하다	4
기문총화	하	432	203	청주목사 정효성이 종이를 잃은 중의 호소를 듣고 계책을 써서 종이를 찾아준다	1
기문총화	하	489	348	공주판관 이지광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준다	1
청구야담	1	4	28	유진향이 술 빚는 집을 찾아오려다 죄를 덮어준다-어사가 나중에 유진향의 죄를 덮어준다	5
청구야담	1	22	111	밀양 아랑 이야기	4
청구야담	4	110	483	공주판관 이지광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준다	1
청구야담	6	161	724	어사 박문수가 자신을 문전박대한 기생을 벌하고 신의있던 그 여종을 치하하다	5

### 3. 판결담의 유형분류와 구조분석

판결담 내에서 판결이란 ‘공적 과정, 즉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판단의 과정 뿐 아니라 공적 과정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갈등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뿐 아니라 특정한 갈등 상황이 공적 과정을 통해 해결될 때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내부로 갈등 상황과 해결책을 공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판결담에서 판결을 공표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

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결국 갈등이 다수에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주체의 판단 역시 공개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공표란 판단과 더불어 판결담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표의 양상을 판결담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공표의 양상이 판결담 내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야기들이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판결담이 판단과 공표를 필수요소로 하는 것이지만 이야기 속 판결은 늘 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공적 과정을 거쳐 처벌해야 하는 문제를 은폐하려는 다른 주체가 존재하거나 문제 상황에 관용을 베풀 것인지 엄정하게 다룰 것인지를 판결의 주체 스스로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판결하는 주체는 다른 주체의 다른 판단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스스로의 양가적 가치 판단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는 존재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주체가 갈등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공표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주체는 판단, 즉 인식의 과정에서 ‘공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갈등을 구분한다. 전자는 공표되어야 하는 것이며 후자는 공표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도 정리할 수 있겠다. 문제 상황에 따라 공적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다. 판결하는 주체는 선행되는 판단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 처리 방식을 고심하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갈등이 만일 공적 과정을 거쳐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이를 공적 과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갈등이 공표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주체가 ‘공표되어야 할 갈등’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성공적으로 공표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판단의 주체는 스스로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문제를 공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문총화>에서 판결담으로 분류한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 1) 판서 김시양이 영남을 순시하다.
- 2) 고을에서 계책을 잘못 세워 시기를 놓친 탓의 향청의 죄수를 잡아다 곤장을 치려 하다.
- 3) 누군가 자신의 몸을 죄수에 붙기 위에 댄다.
- 4) 들어온 사람은 김시양의 사위이며 죄수는 사위의 숙부였다.
- 5) 김시양이 사위를 끌어내고 국법대로 곤장을 치다.<sup>10)</sup>

이야기에서 판결의 대상이 되는 갈등 상황은 죄수가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김시양이라는 공적 주체는 갈등 상황을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주체이며, 이에 대해 ‘곤장을 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는 판결하는 주체가 문제를 ‘공적 과정’을 거쳐 처리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판단대로라면 죄수는 곤장을 맞게 되며 그의 죄는 공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판단과는 별개로 이 수행, 즉 공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김시양의 사위가 이러한 판결을 막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판결하는 주체의 지향과 이에 개입한 다른 주체의 지향은 충돌하게 되고 공표는 지연된다. 그러나 결국 판결하는 주체인 김시양의 지향이 힘을 얻어 최초의 판단대로 이를 처벌하고, 최종적으로 공표가 이루어진다.

서로 다른 주체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이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역장(力場)이 생기는 이상의 과정은 공간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면

10) 김동욱 역(2008), 앞의 책(상), 335쪽.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공표한다’는 것은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공적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사적 공간’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공적 판결이 수행되지 않고 은폐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적 공간은 공적 과정, 재판이나 법령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공시적 의미의 공간을 의미한다. 야담 내에서 주로 판결의 장이 되는 공간은 마을, 지역과 같은 소공동체들이 대부분이며 판결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 역시 이와 동일한 범주이다.

앞서의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면 판서와 좌수라는 관계를 통해 내려진 공적 영역의 판결을 장인과 사위, 숙부와 조카라는 사적 영역의 관계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립이다.<sup>11)</sup> 김시양이 판결을 수행한다는 것은 판결이 이루어질 고을 내부에서 죄의 경중을 평가하고 이를 공식화한다는 것으로, 공적 공간 내부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반면 사위는 대신 사적 공간 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각기 지향하는 대립적 역장(力場)이 발생하는데, 김시양은 사적 공간을 지향하는 힘을 넘어서 공적 공간으로 판결을 공표한다. 판결하는 주체인 김시양은 ‘적합한’ 선택을 한 것으로 기술되므로, 이 이야기는 판단하는 주체가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여 주체의 갈등 인식과 갈등의 공표 여부를 통해 판결담의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체가 ‘공표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공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를 다른 방해 없이 그대로 수행하여 해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유형이다. 그런데 이 갈등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다른 주체들이 개입하여 역장이

11) 사적 영역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발화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적 영역 내에서 해결한다면 공적 판결은 취소되거나 재고되며, 이 과정에서 공표되어야 할 판결은 사적 영역 내로 은폐된다. 그러므로 이를 ‘공표’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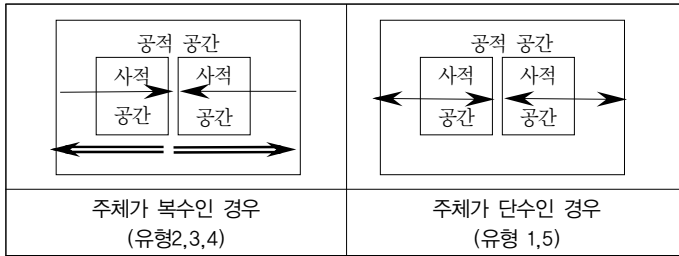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판결하는 주체의 역장이 우위에 놓여 공표에 성공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열세에 놓여 공표에 실패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것이 각각 유형 2와 3이다. 그런데 유형3은 결국 잘못된 판결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다른 판결의 주체를 만나 결국 유형 2로 회귀하는 복합적인 구조의 이야기들 역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유형4라 한다.

반면 주체가 특정한 갈등 상황을 ‘공표되지 않아도 될’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특정한 갈등이 공적 공간에서 해결되어도, 사적 공간에서 해결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갈등에 대해 복수(複數)의 가능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판결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들을 모두 묶은 것이 유형 5이다.

주어(주체)	목적어(갈등 성향)	서술어(공표여부와 평가)	유형
공적주체가	공표될 문제	공표되다-긍정	— 유형1/2
		공표되지 않다-부정	— 유형3/4
	공표되지 않아도 될 문제	공표되다-중립	— 유형5
		공표되지 않다-긍정	— 유형5

인식 양상에 따라 차례로 1,2,3,4로 나뉘는 이상의 유형은 역장과 주체의 지향에 따라 크게 둘로 분류되기도 한다. 공적 해결을 지향하는 주체와 사적 해결을 지향하는 주체의 역장이 만들어지는 유형 2,3,4와 하나의 주체가 당위적 판단을 통해 이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가능항 속에서 고민

하고 선택하는 유형1,5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공표되어야 할 이야기가 공표된 유형으로 공적 주체가 갈등을 인지하고 처벌 및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유형이다. 판단과 공표의 과정에서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셈이다. 특정 갈등 상황에 대한 공표 범위에 이견이 있는 두 주체가 갈등하는 역장이 작동하지 않고, 공적 공간을 지향하는 한 주체의 역장만이 존재한다. 이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복수적이라기보다는 단수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야담집	권	번호	쪽	내용
기문총화	중	314	528	창녕 현감 고유가 악행을 일삼던 중을 처벌함. 죽은 후 청지기가 가난한 자손을 거둬주다
기문총화	하	432	203	청주 목사 정효성이 팔던 종이를 팔던 중의 호소를 듣고 계책을 써서 종이를 찾아주다
기문총화	하	489	348	공주판관 이지평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주다
청구야담	4	110	483	공주판관 이지평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주다

- 1) 청주 목사 정효성이 종이를 팔아 사는 중이 종이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호소를 듣다.
- 2) 정효성은 해결이 불가하다고 중을 쫓아내다.

- 3) 정효성이 길가의 고목을 잡아다 가두라고 억지를 쓴 후 아전들이 밤새 지키게 하다.
- 4) 밤에 살펴보니 아전들이 모두 자고 있어 이를 꾸짖으며 집집마다 종이 한권씩을 내어 이름을 쓰게 하다.
- 5) 종이 잃어버린 중에게 자신의 종이를 찾으라 하고 이를 산 사람의 뒤를 추적하여 범인을 찾아준다.<sup>12)</sup>

이 유형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현안에 대해 공적 주체가 바로 판결하는 것이다. 공표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일 없이,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 혹은 판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판결담의 가장 직선적 형태이다.<sup>13)</sup> 공적 공간으로 공표되어야 할 갈등 상황이 바로 공적 공간 내에서 해결되고 공표되는 것이다. 청주 목사 정효성이 판결의 주체이며, 개입하는 다른 주체는 없다.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갈등 상황은 이후의 유형과 비교하면 크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으므로 지혜담과 유사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적 공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안들을 다루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갈등 상황들이 일종의 현안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요구들이 정직하고 신속하게 해결된다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존재하는 공동체 내의 기초적 질서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표되어야 할 갈등이 타인의 개입과 같은 어려움에도

12) 김동욱 역(2008), 앞의 책(하), 243쪽.

13) 물론 드러나지 않은 범인은 판결을 방해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유형에서 상반되는 역장이 판결 자체가 아니라 공표를 방해하는 맥락으로 작동했음을 고려한다면,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공적 주체가 가지는 일방향적 역량만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불구하고 공표되는 이야기이다. 복수의 주체가 서로의 입장에 따라 사적 해결과 공적 해결을 각각 지향하고, 그 역장 내에서 공적 공간을 향하는 공적 주체의 역장이 우세하여 결국은 문제가 공표되고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되는 이야기인 셈이다.

야담집	권	번호	쪽	내용
기문총화	상	119	293	수어사 이완이 시녀의 피붙이를 위한 대비의 청탁을 거절하다
기문총화	상	140	335	영남을 순시하다가 향청에서 사돈에게도 엄히 법을 내리다
기문총화	상	203	524	숙종에게 직간을 하다가 곤장 다섯대를 맞고 풀려난 판서 윤씨
기문총화	중	271	243	어사 박문수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준 가난한 양반 소년에게 중매를 서고 결혼시켜주다
기문총화	중	312	516	은혜입은 중에게 은혜를 갚으려다가 범인임을 알고 고발한 관찰사 황인검

- 1) 이완이 남한산성을 지키는 수어사가 되었을 때 아전이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
- 2) 아전의 누이가 대비의 시녀이다.
- 3) 대비가 자신의 시녀를 생각해 아전의 죄를 덜어달라고 이완에게 청하다.
- 4) 이완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다.

<119, 대비의 청탁을 거절한 이완><sup>14)</sup>

이는 <기문총화>에 수록된 이야기로 이완이 대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전의 죄를 엄히 묻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 이완은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자질을 가진 관리이다. 공적 주체인 이완은 아전의 죄를 판단하고 죽음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다. 이 판결은 그대로 수행될 수도

14) 김동욱 역(2008), 앞의 책(상), 293쪽.

있지만, 대비의 개입으로 인해 지연된다. 대비는 자신과 시녀의 사적 관계와 시녀와 오라비의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수행될 공적 판결을 재고하려 한다. 자연히 이 과정에서는 두 주체 사이에 역장이 반대로 작동한다. 이완은 이것이 공적 공간으로 발화되어야 할 당위를 가졌다고 보았고, 대비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 주체인 이완은 그 힘을 넘어서서 원래대로의 판결을 고수한다.

물론 대비라는 인물에게서 발생하는 역장은, 단순히 사적 관계 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을 지연시키는 인물의 권위가 클수록 이를 넘어서 공적 공간으로 발화하고자 하는 공적 주체의 능력, 혹은 힘은 커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적 주체가 가진 자질이 되기도 한다. 즉, 이 유형의 이야기들은 사적 공간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힘을 누르고 갈등을 공적 공간으로 공표한 엄정한 판결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이자 성공한 판결담이다. 앞서 언급한 김시양의 일화 역시 이 유형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공표해야 할 갈등을 공표하지 못하는 일종의 실패한 판결담이다. 복수의 주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각기 달리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형 2와 유사하나 사적 공간을 향하는 주체의 역장이 더 강력하여 결국 갈등이 공표되지 못한다. 가장 개수가 적은 유형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잘못된 판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잘된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잘못된 판결’을 시간이 지나 다시 해결하는 이야기인 유형 4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봐도 그렇다.

야담집	권	번호	쪽	내용
기문총화	상	208	557	명을 어겼다가 조태체에게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건진 아전
기문총화	하	437	228	자신의 청지기가 궁녀와 간통하여 이를 호소해 목숨을 구하다

- 1) 병조판서 조태채가 아내를 잃은 후 슬퍼하다.
- 2) 처리할 일이 있어 새벽부터 병조의 아전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다.
- 3) 조태채가 아전을 꾸짖고 곤장을 치려하다.
- 3) 아전이 자신은 상처를 했으며 네 아이를 키우다가 공무에 늦었다고 하다.
- 4) 조태채가 이를 가없이 여겨 용서하고 쌀과 피륙을 넉넉히 주다.
- 5) 이는 사실 아전의 거짓말이다.<sup>15)</sup>

이상의 이야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관리가 아전의 거짓말을 알지 못하고 공무에 늦은 것을 사사로이 용서한 것이다. 조태채는 병조의 아전을 처벌하려 한다. 반면 아전은 이러한 판결을 유예하려 한다. 하나의 갈등 상황에 대한 두가지 다른 판단은 모순 관계를 맺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대로 공표할 수 있는 것이 공적 주체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공적 공간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던 갈등의 상황은 결국 사적 공간 내부로 수렴되며, 이는 사적 공간으로 향하는 역장을 극복하지 못한 공적 주체의 능력 부족이기도 하다. 공표되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다루는 유형 5에서는 결국 공표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 주체의 가능한 선택임을 긍정한다. 반면 이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갈등은 공표되어야 하는 당위를 강력히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네 번째 유형은 공표되어야 하나 공표되지 못한 판결을 시간이 지나 다시 조사하여 이를 다시 공표하는 이야기이다. 유일하게 이 유형의 이야기에만 시간성의 문제가 개입되어 이중의 이야기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데,

---

15) 김동욱 역(2008), 앞의 책(상), 558쪽.



유형 3의 판결 실패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표하는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는, 공표되어야 할 대상이 이중적인데, 과거에 수행되지 못했던 ‘갈등 상황에 대한 진위’와 함께 ‘은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다. 잘못된 판결을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지 않고 다시 조사하여 잘된 판결로 남기고자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 상황은 가장 ‘공표되어야 할’ 것들,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갈등이나 범죄에 속한다. 그렇기에, 이미 종결된 판결 실패담들을 다시 판결하도록 하는 이야기들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혼담들이 대부분 이 유형의 이야기에 속한다.<sup>16)</sup>

야담집	권	번호	쪽	내용
기문총화	상	118	290	김해 부사 박영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기문총화	중	252	135	귀신의 한을 듣고 형조참의가 된 후 범인을 잡아준 김공
기문총화	중	313	521	귀신의 해원을 듣고 살인 사건을 해결한 조현명
기문총화	하	416	149	형조판서 이완이 임의로 재판중에 사람을 죽인 이를 벌하다
청구야담	1	22	111	밀양 아랑이야기

- 1) 경상도 관찰사 시절 조현명은 장시 통판이던 정언해와 함께 일했다.
- 2) 조현명이 칠곡 땅에서 정언해에게 배이발과 배지발을 찾고, 배이발 딸의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오라 하다.
- 3) 정언해가 칠곡으로 가 시체를 살피는데 시신에 맞은 흔적이 있다.
- 4) 감영에서 삼촌인 배지발이 계모인 형수와 짜고 친조카를 죽였다고 고백하다.
- 5) 정언해가 이를 알게 된 자초지종을 조현명에게 물으니 어젯밤 꿈에

16) 원혼이 죽어서도 자신의 진실을 발화할 만큼 억울한 사건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사회 내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잊혀지면 안되는 갈등 및 범죄라는 점을 방증한다.

서 죽은 딸의 원혼이 찾아왔다고 말한다.<sup>17)</sup>

이는 <기문총화>에서 기술된 판결담이다. 조현명이라는 인물이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아랑 설화의 변이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해당 유형의 이야기들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원혼이 과거의 미제 사건을 호소하여 공적 주체가 이를 밝혀낸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 즉, 판결의 대상이 되는 갈등 상황은 대부분 살인 사건이다. 은폐된 살인 사건은 가장 강력하게 사회의 법규와 도덕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이며 그렇기에 원혼의 해원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상황은 ‘다시’ 올바르게 판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주체가 필요하다.<sup>18)</sup>

이 유형의 이야기는 공적 발화, 혹은 공표라는 의의를 가지는 판결담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적 질서의 위반에 관해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의 귀신들은 일종의 원혼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들을 사적으로 벌할 능력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귀신들은 이 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공적인 판결의 장에 놓아두면서, 갈등 상황에 대한 정당한 판결과, 은폐된 진실에 대한 공표를 이중으로 요구한다. 공적 공간으로 공표되었어야 할 ‘과거의 갈등 상황’이 사

17) 김동욱 역(2008), 앞의 책(중), 521쪽.

18)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면서도, 사적 복수를 수행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지도 않는 것은 설화의 보수성을 보여준다. 아랑의 ‘복수’는 기실 허용되지 않았으며 생명을 잃은 아랑이 생명을 보상받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황인순,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91~415쪽.

적 공간 내에서 은폐되었고, 이를 ‘현재적 시점에서 재공표’하는 것이 이 유형의 판결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다섯번째 유형은 공표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의외의 관용을 통해 사적으로 해결되거나 묵인되는 이야기이다. 앞서의 네 유형에서 야기된 갈등이나 잘못들은 ‘공표되어야 할’, 즉 공적 공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의 갈등은 반드시 공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며 사적 공간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가능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공적 주체 스스로 해결의 가능항들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공적으로 판결된다면 엄정한 주체로, 사적으로 판결되어도 관용을 가진 주체로 평가될만한 문제들이다. 이 유형은 사적 해결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비교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공적으로 해결할 갈등은 아니라는 점이 다르며 따라서 이러한 판단 주체의 행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술된다.

야담집	권	번호	쪽	내용
기문총화	상	183	445	참판 유심이 술을 먹고 실수한 백성을 풀어주다
기문총화	상	204	527	신하의 충간을 듣고 연회를 베풀고 호피를 내준 숙종
기문총화	중	270	232	어사 박문수가 자신을 문전박대한 기생을 벌하고 신의있던 그 여종을 치하하다
기문총화	중	307	480	이완이 자신의 과오를 용서해준 도적의 괴수를 차후 처벌하지 않고 방면하다
기문총화	하	424	169	강서가 선조에게 술을 얻어 놀다가 자신이 탄핵당할 줄 알았으나 선조가 벌하지 않다
청구야담		4	28	유진향이 술 빚는 집을 찾아오려다 죄를 덮어주다-어사가 나중에 유진향의 죄를 덮어주다
청구야담		161	724	어사 박문수가 자신을 문전박대한 기생을 벌하고 신의있던 그 여종을 치하하다

- 1) 승지 강서가 동료들과 승정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짐을 알다.
- 2) 강서가 선조에게 하사주를 얻기를 청하다.
- 3) 날이 밝아 강서의 당직이 되자 강서가 꺾을 떠나려 하다.
- 4) 사람들이 이를 의아해하며 묻자 강서가 자신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 것이라 예견하다.
- 5) 사헌부에서 강서의 죄를 묻자 임금이 이를 윤택하여 다음날 벌을 주기로 하다.
- 6) 다음날 임금이 강서가 이미 벌을 받았다고 하며 다시 벼슬을 주다.<sup>19)</sup>

이 판결담의 판결을 담당하는 공적 주체는 임금이다. ‘임금이 승지 강서의 죄에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지 않다’는 구조로 재구할 수 있는 판결담인 셈이다. 이때 판결의 대상, 즉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은 술을 마시다가 강서가 임금에게 하사주를 얻기를 청한 것이다. 이에 임금은 그에게 하루간의 벌을 준다. 이때 판단과 공표를 기반으로 한 죄에 대한 판결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하루만에 수정된다.

이때 판결을 수행하는 주체는 임금이며, 판결을 축소하고자 하는 주체 역시 임금이다. 어찌보면 모순되는 두가지 결정이 한 인물 내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유형은 일견 합당한 판결이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임금의 판결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된다.<sup>20)</sup>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당시 사회관습적 맥락에서 강서의 행위는 용인 가능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엄정하게 처벌해도 되지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잘못이나 갈등이 아니었

19) 김동욱 역(2008), 앞의 책(하), 169쪽.

20) “태평성대의 기상이 이와 같았다” 등의 서술을 참고했다.

던 것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들은 공적 공간에서 해결되어도, 사적 공간에서 해결되어도 좋은 양가적 가치를 가진 갈등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야기들의 예를 통해 본다면 ‘술을 마시다, 술을 먹고 주정을 하다, 간하다’ 등은 앞서의 유형들에서처럼 ‘반드시’ 공적공간으로 공표되어야만 하는 갈등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주체였다고 해도 두가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모순을 빚지 않는다.

#### 4. 공동체의 지향과 판결하는 주체의 리더십

이상의 서사구조를 정리한다면, 판결담에서 공적 주체는 갈등 상황을 판단하는 차원과 공표하는 차원에 관련되며 이를 통합적으로 판결의 과정으로 본다. 두가지 차원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갈등 상황 자체를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이 판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공적 주체의 능력 중 앞의 요소, 즉 인지와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공표의 경우는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 공동체 내부에 발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판결에서 선택되는 해결책은, 단순히 공적 주체의 판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개별적 해결책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갈등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공적 공간에서 포용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판단하는 주체의 역량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택 역시 공적 주체가 ‘개인적으로’ 비범한 인물일 때 쉽게 수행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2와 4 유형에서 공적 주체들은 ‘사적 공간에서만 공표’하려 하는 주체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공적 공간으로 이를 공표한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 위해 이를 수행한다. 이는 갈등 상황을 이해하는  
 앎과, 다양한 역장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위치까지 판결을 공표해내는 강  
 직함과 엄정함 등과 같은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유형 4의 경  
 우는 사실 유형 3이 될 수 있는, 즉 당위에도 불구하고 공표되지 않은 실  
 패한 판결담들을 되돌리는 이야기이다. 이미 실패한 판결, 실패한 판단의  
 주체들에게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적절한 판결로 되돌려 다시 공적 공간으  
 로 공표하는 이야기이다. 이는 살인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기대되는 판  
 단과 판결이 있으나 모든 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공적 공간으로 특정한 갈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공  
 표할 수 있는 공적 주체란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갖춘 주체로 판단된다.

그러나 판결이 공표되는 공동체 내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큼 새  
 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판단하는 주체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아니라는 점  
 이다. 공표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되며 각각의 역장이 구성된  
 다는 점, 그리하여 공표의 당위적 범위가 늘 합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판결담에서 인식하고 있는 ‘좋은 판결’과 ‘좋은 판결을 내  
 리는 주체’의 자질이란, 보다 복합적 차원의 요소들을 포괄한다. 2와 3유  
 형은 공표되어야 하는 갈등 상황이라는 인식은 같으나 공적 주체들의 수  
 행은 다르다. 공적 주체들이 공적 공간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판단한 갈등  
 상황에 대해 다른 주체들이 개입하면서 이를 사적 공간으로만 공표하고  
 자 하는 역장이 만들어졌는데, 유형 2에서는 공적 주체가 최초의 판단대  
 로 판결을 수행하지만 유형 3에서는 최초의 판단과는 다르게 판결이 유예  
 되거나 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유형 2에서는 이를 수행한 공적 주체들에  
 대해 긍정적인 자질을 기술한다. 앞서 제시한 이완 이야기에서 “대비는  
 이에 부끄러워했으”며 “현중은 이완을 공경” 했다는 기술을 찾아볼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유형 3에서는 이를 수행하지 못한 공적 주체들을 긍정

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조태채의 이야기에서 거짓을 꾸며낸 아전을 “일부러 거짓을 꾸며 모면”했다고 기술한 지점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갈등을 공적 공간으로 공표하는 것이 공적 주체의 자질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유형 5에 속하는 유진항의 이야기<sup>21)</sup>에서 유진항은 공표되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사가 “치부(致富)한 유진항을 칭찬하고 장려”하며, 임금 역시 이를 “가상히 여겼”다는 기술은 긍정적 진술에 가깝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훌륭한 공적 주체에 대한 평가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결 및 공표의 영역에서 ‘자신이 판단한대로’ 수행하는 강직함과 엄정함이 공적 주체의 자질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갈등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관습과 법률을 적절히 고려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질 역시 공적 주체의 자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태채의 이야기에서 갈등 상황은 아전이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유진항의 이야기에서는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빚은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해 조태채는 ‘판결하다’를 선택했고 유진항은 ‘판결하지 않다’를 선택했으나, 갈등의 구체적 상황이 다르므로 두 주체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아전의 행위는, 마땅히 판결, 혹은 처벌되어야 할 것이나 백성이 술을 빚었다는 상황은 관리의 판단에 따라 공표하지 않아도 가능한 문제로 여겨지는 사회적 관습이 후자의 경우에 더 강력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 즉, 넓은 범위의 공동체적 맥락에서, 즉 관습 뿐 아니라 법규 속에서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즉 ‘복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갈등 상황이 존재하며, 이 맥락 안에서 공적 주체가 공표하여 문제를 확장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21) 이월영 역(1995), 앞의 책, 28쪽.

이러한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언급한 유형 5이다. 이 유형들에서 공적 주체는 하나의 사항에 대해 가능한 판단이 여럿이라는 점을 고민 하면서 공적 공간으로 죄를 공표할 것인지 혹은 사적 공간에서 관용을 베풀 것인지를 선택한다. 앞서의 유형에서는 각기 다른 주체들의 각기 다른 판단이 서로 다른 역할이나 가치관에 의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판결하는 주체는 ‘엄정한’ 자질을 갖추었으므로 다른 주체들이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향을 고수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판단은 동일 인물의 것이다. 엄정하거나 지혜롭거나 혹은 관용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정한 판단을 내린다고보다는 가능한 해결 방법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체성이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일관된 것도, 박제된 것도 아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공적 주체의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오히려 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즉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가능항목을 고려하는 자체가 판결하는 주체의 자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공적 주체로서 보여주는 자질은 단순히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며 늘 특정한 방향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야담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양한 갈등 상황에는 복수의 가능한 갈등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들 중 모두가 긍정되기도 하고, 혹은 둘 중 하나만 긍정되기도 한다. 또한 제시한 해결책이 정말로 합리적인 것인가 의심받기도 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지혜, 인지 및 판단 능력은 아니라고 보았다. 공표될 수 있는가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결담에서 긍정되는 공적 주체로서의 자질은, 주체의 개인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가능한 선택항목 중 공동체 내의 코드, 즉 관습적·사회적·법적 지



향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에 가까우며 공동체의 지향은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유형 4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원혼 설화, 혹은 아랑 설화 류에서 살인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공적 과정을 거쳐 판결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를 판결해야 하는 원님이 용기가 없어 원귀의 해원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혹은 지혜가 없어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공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판결의 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이 죄상을 공표한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서라도 죄를 밝히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공동체 내에서는 결국 올바른 판결을 하는 판결의 주체가 나타나며, 올바른 판결 역시 가능한 것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공동체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혹은 판결담이 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유형 2에서 두 주체의 판단이 다를 때, 공표할 것을 선택하는 주체의 역장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는 주체의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역장이 놓인 공동체의 지향이 이에 힘을 보태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담은 공적 주체로서 개인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그가 활용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코드를 재현하는 이야기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이다. 개인이 위치한 공적 공간의 관습과 맥락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바람직한 공적 주체, 혹은 리더 및 관리자의 상을 재현하지만, 그렇다면 만일 그가 비합리적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결여로만 설명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담 속에서 선택되는 판단들은 이미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라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며, 판단하는 주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시가능한 문제 해결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주체의 리더십이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 리더들은 강직하거나 지혜로울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복적이기는 어렵다. 이는 판결담이 가지는 필연적인 보수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성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될 것은 아니다.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명분과 질서, 규율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코드 내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는 주체는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원칙적이고 안정적인 판단과 판결을 수행할 수도 있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판결담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인지 과정과 결과의 공표 단계가 판결담의 특질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판결담에서 공적 주체는 갈등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판단하며 동시에 이를 판결의 과정을 통해 공표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비범한 개인의 능력과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놓인 사회적 코드 내에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임에 주목하고자 했다. 따라서 판결담은 체계 내부의 코드를 재현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역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수성은 그러나 동시에 판결의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체계의 코드를 재인식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특정한 갈등 상황에 대해 가능한 판단은 복수이며, 단하나의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적 주체가 특정한 판단을 선택하는 것은 공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능력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적 판결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내에서 수용가능한 방향인지의 여부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복수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적 상황에서 단하나의 판결을 선

택하는 것은 체계의 특질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쁜’ 판결을 개인의 무지로 치환하기보다는 이러한 판결을 선택하게 한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으로서만 리더십을 규정하기보다 사회 공동체의 지향이 리더십을 규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체계가 생성하는 합리적 가능항들이 ‘좋은’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물론 공적 주체를 중심으로 판결담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의 코드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공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일련의 소수자들이 발휘하는 리더십의 양상들이 배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적 과정이 아닌 판결담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다양한 리더십의 양상이 표현되지만 특별히 판결의 상황 속에서 조력자로서 공적 주체를 지지하는 주체들에 관해서는 논의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상, 아세아문화사, 2008, 3~688쪽.
-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중, 아세아문화사, 2008, 3~686쪽.
-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새벽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하, 아세아문화사, 2008, 3~689쪽.
- 이월영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 1~868쪽.
- 김옥숙,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236쪽.
- 박여범, 「說話에 나타난 訟事의 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학회, 1996, 359~374쪽.
- 이인경, 「口碑 '訟事說話'의 재해석과 현재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25집, 2007, 335~390쪽.
- 이현홍, 「문헌소재 송사설화의 유형과 의미」,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337~369쪽.
- 정인관, 「〈홀름한 원님〉 설화의 구조와 의미」, 『청담어문교육』 1, 청담어문교육학회, 1988, 131~158쪽.
- 최경숙, 『『명판결담』에 나타난 갈등 해결적 말하기 전략 : 사실 확인된 사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0, 한국어교육학회, 1999, 437~459쪽.
- 황인순,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2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91~415쪽.

ABSTRACT

Study on Leadership of Adjudging subject  
in Korean Classical Ruling tales

Hwang, In-soon

This essay will focus on Ruling tales in *Kimunchongwha* and *ChungGuYaDam*. Ruling tales can be defined as a tales which demonstrate public adjudging process by adjudging subjects. This process is significant to consider leadership in Korean classics because the judgment is kind of announcement of public issues. Adjudging process consist of two phases : to judge the situation and to announce the result.

In chapter two and three, I classify the ruling tales considering with that perspective, especially concentrating the aspect of announcement. In chapter four, I conclude that announcing process itself is marked element than the intelligence of judging subject. It means that ruling tales is not only the story about ability of brilliant subject, but that story about the problematic code of social conflicts agreed in a certain community.

If ruling tales demonstrate consensus standard in the society, the role of adjudging subject is to select the best solution among practicable candidates. Therefore, capability of judging leader depends on what is suggested, in other words, what is choose-able as practicable solutions in a society.

**Key Words** Ruling tales, Adjudging subject, to judge and announce, Korean Classical Leadership, Leadership in society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